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## 2022년 3월 31일

##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명석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41 호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의 제목 "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협의)"를 "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"를 "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"로 한다.

제46조제1항 본문 중 "의장"을 "전자투표, 기명투표나 의장"으로, "호명투표에"를 "호명에"로 한다.

제52조제1항 전단 중 "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"를 "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이내"로 한다.

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① 위원회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

법률」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.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·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. 다만,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.
-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.
- ④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.

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	제19조의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
<u>협의)</u>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	심의)
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	
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・결정	
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	
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	
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	
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	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
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	거쳐야 한다.
의장이 결정한다.	
제46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	제46조(표결방법) ①
는 <u>의장</u> 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	전자투표, 기명투표나 의장-
립 또는 거수하게 한 후 <u>호명</u>	<u>호명</u>
<u>투표에</u>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	<u>에</u>
결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7	
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	
한다.	
② 삭 제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	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
정)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	정) ①
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<u>배부된</u>	의회 홈
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	페이지의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

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 를 변경할 수는 없다.

② (생략)

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제 ① ~ ④ (생 략)

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
 <삭 제>

 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

 다.

<신 설>

<u>된 날부터 5일이내</u>	
② (현행과 같음)	
∥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등	공개)
① ~ ④ (현행과 같음)	

제58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 사) ① 위원회는 「주민조례발 안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2항 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 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 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.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 •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 으로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. 다만,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

- 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.
-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.
- ④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 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.